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9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임용 교원자격) ① 본 대학의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 18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② 담당과목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한 학과와 동일한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대학 교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채용공고) 신규임용교원의 공개채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신규교원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간협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공개 채용한다. 단, 학기 개시 2개월 미만 시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채용 전공분야 및 인원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수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3. 교원신규교원채용 절차는 [별표1]과 같이 전임교원자격심사, 서류심사(기초심사와 전공심사), 공개강의 심사, 면접심사에 의한다.

제4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임용지원서 [별표2]
2. 연구실적목표표 (본 대학 소정양식)
3. 교육 및 연구계획서 (본 대학 소정양식)
4. 자기소개서 (본 대학 소정양식)
5. 학위 및 성적증명서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7. 석·박사 학위논문 (외국박사학위는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신고필증)
8. 기타전항이외의 필요한 서류

제5조(신규임용자격심사) ① 교무처장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 서류 일체를 심사하여 지원자들의 응모자격, 전임교원자격 여부, 지원 서류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용심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교무처장은 지원자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지 못한 지원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용심사대상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지원자는 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9	관리 부서	교무처

- ② 전임교원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에 대한 학력과 경력은 [별표 3] 평가표로 산정한다.
1. 학력평가 : 동일계 박사학위 소지자 (단, 비정년트랙교원은 박사학위 재학 이상인 자)
 2. 산업체경력 : 동일계의 산업체의 3년 이상 경력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경력 : 동일계의 교육경력연수 가산 점수, 다만, 초, 중, 고나 조교 교육경력은 제외함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국내·외 석학
 2. 외국인 교원
 3. 특정분야 전문가
 4.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자
 5. 본 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 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외 전공신규교원 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및 경력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라 함은 서류를 통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말한다.

- ② 총장은 교원신규임용에 있어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반되지 않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내·외 교수 3인 이상을 구성한다.
- ③ 교무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지원자들의 명단과 함께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일체 및 심사기준[별표3]을 주어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하도록 한다.
- ④ 서류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해 전공분야 연구업적 및 채용분야와의 근접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류를 개별 심사한 후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⑤ 교무처장은 산출결과를 근거로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공개강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단, 채용임용 규모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공개강의심사) ① 공개강의심사는 총장,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에 한한다.

- ② 공개강의는 교수방법의 우수성, 강의내용의 충실성, 강의태도, 질의응답의 능숙성, 전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총장, 보직교수와 총장이 위촉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 ② 면접심사자들은 우리 대학교의 창학 정신을 고려하여 임용후보자의 대학교수로서의 인품과 학자적 소양 및 자질, 의사소통능력, 교육 및 연구수행 가능성, 전임교원으로서 대학 발전기여가능성, 학생지도능력, 해당전문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3/9	관리 부서	교무처

제9조(신규임용심사평가) 신규임용심사평가기준은 [별표 3]에 의거하여 공개강의와 면접심사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용후보자 확정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 공개강의 심사 점수, 면접심사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정년트랙 70점, 비정년트랙 65점 이상인 자로 임용 후보자를 확정한다. 단, 기준점수로 인원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점수순 위대로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

② 임용후보자의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직급)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승인한다.

제12조(임용제청 절차)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대상자를 심의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한 후 해당임용교원을 법인이사회에 임용을 제청한다.

③ 신규임용교원은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의담학회 정관과 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4/9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규정변경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재계약 임용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5/9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6/9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1]

교원 신규임용 절차

순 번	절 차		내 용	담당 부서	비고
1.	채용계획수립		신규채용 계획수립 한다.	교무처	
2	채용 계획 심의		채용분야와 지원자격 심의한다.	교원인사위원회	
3	채용계획확정		교원의 자격, 인원수, 채용분야 확정한다.	총장	
4	채용광고		본교 홈페이지, 간협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교무처	
5	서류접수		신규임용 평가기준에 준한 서류 접수한다.	교무처	
6	서류 심사	위원구성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교원으로 외부교수가 1/3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	
		서류평가	신규채용 심사평가 기준에 준하여 5배수의 후보를 선발한다. (3배수가 안되어도 자격미달은 탈락한다.)	심사위원회	
7	공개 강의	공개강의 알림	서류심사통과자에게 공개강의 내용, 일시를 연락한다.	교무처	
		공개강의 심사위원	공개강의평가는 총장,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에 한한다.	교무처	
		공개강의 평가	평가표에 의해 전공 관련된 강의 능력 평가한다.	교무처	
8	면접심사		총장과 보직교수의 1차 면접 심사한다.	교무처	3 배수
9	심사		서류심사+공개강의+1차 면접 점수에 의해 평가 점수 심사하고 후보를 선발한다.	심사위원회	
10	신규임용 동의		표결에 의해 신규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교원 인사 위원회	
11	총장제청		임용대상자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총장	
12	임용 동의		학교법인 이사회는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제청을 동의로 의결한다.	법인 이사회	
13	신규임용		이사장은 학교의 신규임용일자로 교원임용을 임명한다.	이사장	

	<h3>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3>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8/9	관리 부서	교무처

산업체경력사항	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기간산정	비고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대학교육경력	대학명	직급	강의과목	구분 (강의,실습)	주당시수	근무기간 년도 학기	비고
연구비	구분	유무 (0,X)	금액	연구자	기간/취득(수여)일	시행기관(수여기관)	
	연구비수혜			책임□ 공동□ ()인	~		
연구원 해외연수 경력	구분	유무 (0,X)	직급	기간	기관명		
	연구원, 연구소경력			~			
	해외연수경력			~			
자격증	구분	유무 (0,X)	종별	취득일	수여기관		
	국내전문간호사						
	국외전문간호사						
	NCLEX-RN						

- 1)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 2)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합니다.
- 3) 경력란에 기재한 사항은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4) 시간강의 경력은 강의, 실습을 구분하고 한 학기에 여러 대학을 출강한 경우 년도, 학기별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 5) 연구원, 연구소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인정범위: 국가 산하 공인 연구기관에서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원, 간호대학 연구소 경력)
- 6)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양식에 준하여 별지를 첨부하여도 됩니다.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

	<h2>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h2>	문서번호	3-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9/9	관리 부서	교무처

[별표 3]

신규임용 심사기준

구분	항목	평가 배점	점수	평가기준	배점	비고	
서류 심사	학부학력 및 성적심사	15점		① 학부성적 심사	5점		
				② 석사학위 전공적합성	5점		
				③ 박사학위 전공적합성 ③ 최종학위심사(비정년)	5점		
	연구실적	10점		① 연구실적 심사	10점		
	산업체 및 교육 경력	15점		① 산업체 및 강의경력 심사	7점		전문대학 이 상 교육경력
				② 연구원, 연구비수혜, 자격증심사	5점		
③ 교육 및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심사				3점			
공개 강의	전공 일치도	10점		① 교안 작성 및 강의내용의 충실성 심사	5점	전공과목	전공교수
				② 질의 응답의 능숙성 심사	5점		
	강의 우수성	10점		① 영어요약발표 능력 심사(정년) ① 통합교육 진행능력 심사(비정년)	5점	강의내용	내용, 자 질, 열정
				② 강의 진행 능력의 우수성 심사	5점		
	태도	10점		① 강의 태도의 적절성 심사	5점	교수의 자질	준비, 성실
				② 다양한 교육기자재 사용 능력 심사	5점		
면 접 심 사	인성	10점		① 전임요원으로서의 품위 심 사	5점	인격품위	책임감, 신 의, 대인관 계
				②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서 의 자질 심사	5점		
	적합우수성	10점		① 교육자의 사명감 및 교육 철학 심사	5점	채 용 일 치 도	전공, 외국 어, 학력 등 실력
				②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 심사	5점		
	잠재역량	10점		① 전임교원으로서의 대학발 전 기여 가능성 심사	5점	대 학 발 전 에 유 력	자격증, 활 동, 경 험 등
				② 전임교원으로서 조직적응 성 심사	5점		
합계		100점					
판정	심의			가 : 정년트랙 70점 이상, 비정년트랙 65점 이상			